

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 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3월 22일,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3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3계장 이병웅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하여 사회교육시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사회교육 시설인 미술관, 박물관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도 구세인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정보유통의 효율화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도서관진흥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면제함.

3. 검토의견

○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)